



**민권부**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  
**자주 묻는 질문**

1973년 재활법 섹션 504는 연방 기관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연방정부가 지원하거나 시행하는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스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IRS 시설 및 IRS 지원 프로그램에서 섹션 504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자원 봉사자 소득세 지원 현장
- 노인들을 위한 세무 상담 클리닉
- 저소득 세금 클리닉 현장

섹션 504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아래의 답변은 장애인에게 IRS가 실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 나오는 요구를 납세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납세자를 위한 IRS의 합리적 편의제공 정책은 무엇입니까?**

IRS 합리적 편의제공 정책 P-1-47에는 IRS가 장애가 있는 일반 사람들이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무엇입니까?**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연방에서 실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관행, 절차 또는 서비스에 대해 취하는 모든 변경을 말합니다.

**3.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 이상의 중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개인은 섹션 504에 따라 장애인으로 되며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 편의제공을 어떻게 요청합니까?**

합리적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IRS 직원이나 IRS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에게 장애로 인해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변경, 수정, 예외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지하십시오. 편의제공 요청을 시작하기 위해 섹션 504를 언급하거나 "합리적 편의제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5. 합리적 편의제공을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IRS 시설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동안 언제든지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IRS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합리적 편의제공을 사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예, 누구든 IRS가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한 나의 요청을 받으면 IRS가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은 요청을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필요한 편의제공의 유형
- 요청한 편의를 통해 귀하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지 여부
- 요청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프로그램에 과도한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게 될 지 여부

프로그램이 요청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게 된다고 판단하면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편의제공을 찾을 것입니다.

### 8. IRS가 실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내가 요청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합니까?

예, 요청한 편의제공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귀하의 요구 및 관련된 IRS가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근거합니다. 요청한 편의제공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거부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귀하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체 편의제공을 찾을 것입니다.

### 9.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요,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면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10. 내가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IRS가 실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의료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프로그램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납세자에게 의료 문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질문의 범위는 IRS가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장벽을 식별하고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편의제공의 성격으로 제한됩니다.

**11. 합리적 편의제공의 예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작성된 IRS 납세자 편의제공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가능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식별합니다.

- 건물 접근 조항;
- 수화 통역 서비스; 및
- 점자/큰 활자 문서

TAG는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한 요청을 처리하는 데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IRS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자원입니다.

**12. 합리적 편의제공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합리적 편의제공이 거부될 경우 누구에게 G 연락할 수 있습니까? G**

IRS 민권부는 섹션 504에 따라 장애를 가진 개인이 IRS가 실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국세청 민권부 섹션 504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TTY/TTD: 202-289-4394

이메일: [edi.crd.ra@irs.gov](mailto:edi.crd.ra@irs.gov)



**Office of Equity,  
Diversity & Inclusion**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한 요청이 잘못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면, 거부 후 180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민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편: Office of EDI Civil Rights Unit  
Internal Revenue Service, Room 2413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

이메일: [edi.civil.rights.division@irs.gov](mailto:edi.civil.rights.division@irs.gov)